

과도한 정보추구로 인한 미디어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및 유형 분석 연구*

A Case Study of Privacy Invasion Caused by Excessive Information Seeking on Mass Media

이정미(Jeong-Mee Lee)**

초 록

본 연구는 정보추구의 과도성으로 인해 자행되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미디어에서 볼 수 있었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종류별로 분석, 이 중 지나친 정보추구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침해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정보추구의 동기, 주체, 성격이라는 세 가지 기준, 다섯 가지 유형에 기반, 과도한 정보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사례별로 소개했다. 환경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정보추구 자세와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한 정보이용에 대한 몇 가지 고민과 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ry to describe types of invasion of privacy caused by excessive information seeking on mass media. Recent 5 years of cases were gathered and analyzed to see the types of invasion of privacy, and extracted only those cases showing the results by excessive information seeking. Three standards such as the intension, the subject, and the characteristics were selected to differentiate the types and cases. Five types of those three standards were introduced by case by case. The issues regarding ways of privacy protection and correct attitude of information seeking were explored and a few suggestions were included at the end.

키워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요구, 정보추구, 매스미디어, 이용자
invasion of privacy, information needs, information seeking, mass media, users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mlee@swu.ac.kr)

■ 논문접수일자: 2008년 8월 20일 ■ 최종심사일자: 2008년 8월 25일 ■ 게재확정일자: 2008년 9월 3일
■ 情報管理學會誌, 25(3): 231-247, 2008. [DOI:10.3743/KOSIM.2008.25.3.23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의 인터넷 환경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서 이루어지는 개방과 공유,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웹 2.0(O'Reilly, 2005)이라는 개념을 넘어 웹이 인간처럼 스스로 지능을 갖게 됨을 강조하는 웹 3.0(Shannon, 2006)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각기 다른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희망이 넘치는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 더욱더 구체화, 다양화되는 이용자요구에 부응해야만 하는 정보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보 기술의 발달과 함께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대처해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암흑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성선제, 2004).¹⁾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추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 중 과도한 정보추구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연구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각각의 사례 분석을 통해 미디어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와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정보추구 자세,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한 정보이용이라는 이슈에 진지한 고민을 유도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매스미디어의 프라이버시 침해 영역은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할 새도 없이 이곳저곳에서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김형성, 김학신 2008). 효과적인 대책을 찾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체계적인 연구 진행의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매스미디어는 대량의 의사소통 또는 의사 전달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송신자와 수신자라는 의사소통 참여자들과 그들이 주고받는 특정 메시지 외에도 그 메시지를 운반할 운송수단, 즉 매체를 필요로 한다(강상현, 채백 1999)(표 1 참조).

매스미디어는 정보기술과 함께 아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으며²⁾ 인쇄매체로 신문, 영상매체로 텔레비전과 영화, 컴퓨터(인터넷)이 현대사회 정보이용자에게 대중적인 매체이다. 일상생활의 정보추구에 있어서 매스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은 상상하기 힘든 과급력을 가지게 되며 불특정 다수 이용자의 정보추구행태를 논할 때 매스미디어는 그 어떤 정보원보다 강력한 위치에 자리하게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본 연구는 정보원으로서의 매스미디어라는 전체 하에 매스미디어를 정보원으로 하는 정보추구 사례를 분석하였다. 매스미디어의 본질적인 한계, 대중적인 의사소통의 결과로서 행해지는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법학교수인 성선제는 자신의 2004년 논문에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다음과 같이 비유하였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한편으로는 희망이 넘치는 기회의 땅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가 한번도 체험하지 못한 암흑의 공간일 수도 있다.” 본 저자는 그의 비유를 인용, 정보전문가가 가진 기대와 또 그 반대급부로 다뤄질 수 밖에 없는 역기능에 대해 강조하고자 하였다.
2) 신문, 출판, 보도사진, 만화, 텔레비전, 라디오, 대중음악, 영화, 비디오, 광고, 뉴미디어/멀티미디어 등.

〈표 1〉 대표적인 매스미디어와 특성

매체	매체의 특성
신문	가장 전형적이고 중요하며 오래 된 매스 미디어 가운데 한 형태이자 현상이다. 신문은 시사성, 공공성, 주기성 등의 속성을 갖는다. 하지만 신속성, 동시성, 접근의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는 방송 매체에 뒤진다.
텔레비전	가구하면 텔레비전을 떠올릴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어느 때고 마음만 먹으면 접촉할 수 있는 매스 미디어이다. 텔레비전은 ① TV와 시청자의 공존 ② 흐름의 체형 ③ 다양성과 반복성 ④ 상징적 사회참여의 특징을 가진다. 이와 같은 특성은 다시 상업적 동기에 의해 재구성된다. 대중문화는 많은 경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상품으로 고안되기 때문에 그것의 성공은 예술적, 문화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다른 상품과의 상대적이고 경쟁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
영화	그 형식과 내용, 그리고 사회관계 속에서의 위치 등에 따라 지극히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영화는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세계를 현실 그 자체로 착각하게 할 정도의 전례 없는 현실 재현력을 바탕으로 강력하고도 보편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뉴미디어/멀티미디어	컴퓨터의 등장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대중매체를 낳았고 이런 기술의 파급력은 상당해서 우리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대중매체(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책, 신문)는 기술적 특성으로 전달되는 속성이 제한되어 있다면 뉴미디어/멀티미디어의 출현은 하나의 매체에서 영상, 음성(음향), 텍스트, 정지화상 모두를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세계를 한 망으로 묶는 인터넷의 보급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어느 매체보다 편리하고 능동적으로 정보탐색이 가능하다. 대량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은 장점이지만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기 전에 무분별한 정보 과급으로 유해한 정보가 침투될 수 있다는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요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악용되고 있다는 것, 익명성을 이용한 언어폭력과 사기범죄의 증가등과 같은 문제점도 인터넷의 폐해로 거론되고 있다.

2003년 이후 약 5년간 매스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수집, 이 중 과도한 정보추구의 결과라 여겨지는 총 30여건이 분석, 유형화에 포함되었다.

2. 정보 요구 및 정보추구행동, 프라이버시

2.1 정보요구 및 정보추구, 정보추구행동

2.1.1 정보요구

Atkin은 중요한 주위의 대상들에 대하여 개인이 현재 지니고 있는 확신의 수준과 그가 달성하려고 추구하는 표준 상태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외부적 불확실

성의 기능으로 정보요구를 정의하였다. 또한 Taylor는 내재적 요구, 의식적 요구, 형식화된 요구, 절충된 요구의 4단계로, Dervin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의미형성의 요구로 정보요구를 정의하였다. Belkin은 Taylor의 “내재적 요구”라는 개념을 반영하고, 정보요구에서 정보추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식이상 상태(ASK)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ASK를 인지함에 따라 정보요구가 생겨났다고 보았다(Case 2004).

다시 말해 정보요구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자신의 지식이 부적합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정보추구를 이끌어내는 선행적 개념이다. 이때 정보요구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적합한 지식이 들어오면 끊임없이 새로운 요구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는 개념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1.2 정보추구 및 정보추구행동

정보 추구는 “정보” 자체의 개념보다는 “요구”의 개념에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정보추구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정보추구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식에서의 요구나 격차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된 반응으로, 정보를 입수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다. 정보추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현재의 상태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고 이에 따라 미디어를 통해 변화를 창출하려는 자극화 된 행동을 정보추구 행동이라 일컫는 것이다. 이때 미디어는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접근과 사용이 가능한 매체의 숫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이에 발맞추어 정보추구행동에 있어 미디어 접촉 유형(김영재 1992)이나 정보원에 관한 연구(정진식 2000)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이용자가 특정한 정보요구를 인식하여 정보 추구 행동을 할 때 사용하는 매체는 상당히 다양하다(김영재 1992). 또한 정보추구행동은 이용자가 정보원과 접촉하려는 의욕 또는 행동인 정보원과의 접촉추구행동이라는 한 측면과, 접촉한 정보원의 내용 가운데서 어떤 특정 정보만을 선정하려고 하는 정보내용의 선택적 추구행동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의 정보추구 행동은 정보를 추구하는 동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정진식 2000). 과도한 정보추구로 인한 결과를 살펴본다는 목적에 근간해 본다면 본 연구는 정보추구행동 중 정보내용의 선택적 추구행동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연구이다.

2.2 프라이버시

2.2.1 개념적 배경

프라이버시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사람들의 눈을 피한다.’라는 뜻의 Privatus에서 나왔으며, 순우리말로는 ‘은사권’이라고, ‘감추고 있는 사사로운 일’이라는 뜻을 의미한다(이구현, 유일상 2004). 1890년 이후, 워렌과 브랜다이스의 논문 「프라이버시의 권리」(Warren 1890, 장호순 2005에서 재인용)에서 ‘프라이버시 권’에 관련한 개념이 처음 등장했고, ‘프라이버시 권’을 개념화한 것에서부터 ‘프라이버시 권’이 등장하게 되었다. 스캔들 기사가 횡행하여 이로 인한 명예 훼손 등이 심각한 경지에 있었던 1890년대의 사회적 배경 때문에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개념은 등장과 함께 논의가 가속화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은 프라이버시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정의해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 집중과 분배문제가 발생하면서 유럽쪽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개인정보’라는 개념과 함께 각종 개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다(성선제 2004).

2.2.2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개인정보란, 해당 개인의 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정보를 의미하며 ① 사상, 신조, 종교, 양심, 가치관 등 내면적·정신적 비밀, ② 체력,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③ 질병경력 등 심신의 상태, 학력, 전과, 직업, 자격증, 소속정당이나 단체, ④ 재무금융상태, 소득, 채권채무관계, 소유부동산 등 경제정보, 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출생지, 전화번호 등

이 개인정보에 속한다(김갑중 2003).

프라이버시란,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을 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까지 내포한다.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자체가 '프라이버시권'에서 나왔고, '프라이버시'라는 뜻에서도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므로, 프라이버시의 발전과정은 프라이버시권의 발전과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도래 이후, 미디어 활동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그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정영화 2000).

2.2.3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관계

이렇듯 프라이버시는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록 그 정보가 사소하다 하더라도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면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정영화 2000). 초기의 '홀로 남겨질 권리'의 개념에서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프라이버시 개념이 현대 프라이버시 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관계에 기반 한다고 할 수 있다(우지숙 2005). 전래없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타인에 대한 관심 증가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위험성을 증대시킨 반면 보호를 위한 규제는 미비하다는 점(성선제 2004) 때문에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는 더욱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3 정보추구와 프라이버시

앞서 서술한 것처럼 본 연구는 정보추구행동 중 정보내용의 선택적 추구행동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연구이다. 정보추구행동 자체가 현재 상태의 정보부재를 인식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행동이라 전제할 때 정보추구와 프라이버시라는 주제는 정보추구의 동기와 과정을 바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매스미디어라는 정보원의 본질이 아니라 매스미디어라는 특정 정보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의 정보추구행태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스미디어의 정보가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의해 접근될 때 그 정보추구의 결과가 또 다른 잠재적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침해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이는 정보추구 동기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초기 정보요구 방향과는 다르게 정보추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이들의 정보추구 유형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정보추구의 과도성에 기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와 유형

3.1 유형의 구분

발달된 정보기술과 인터넷 환경은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에도 변화를 주었으며 최근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의 경우 전통 도서관 보다 전자도서관이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검색 포털 등 네트워크화된 정보원을 선호한다고 한다(이지연 2006). 이는 현재를 사는 이용자는 뉴미디어/멀티미디어를 고전적인 매체 사용과 다름 없이 이용하

며 자신의 정보추구행동을 풀어나간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듯 현재 우리가 처한 인터넷 환경속에서 매스미디어와 프라이버시 문제는 결국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이용자인 동시에 생산자인 자신이 자신의 정보를 얼마만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에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다루는 프라이버시침해란 ① 사생활에의 침입 ② 사적인 일의 공개 ③ 허보 ④ 사사의 영리적 이용으로 분류한다(Prosser, 1960 장호순, 2005에서 재인용). 이 분류는 어떠한 종류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분류이며 '과도한 정보요구로 인한 매스미디어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사례에 관한 연구인 본 연구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수집된 사례의 내용분석속에서 정보추구의 동기, 주체, 성격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도출했으며 이에 기반해 과도한 정보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매스미디어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살펴보았다(표 2 참조).

도출된 세 특성에 맞춰 수집된 사례들은 ① 정보추구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프라이버시 침해, ② 시스템 상에서의 감시

를 위해 과도한 정보추구를 감행함으로 인해 발생한 프라이버시 침해 ③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정보추구 및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④ 이용자의 능동적 정보추구의 결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⑤ 정보요구방향 와전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로 수집된 총 50 여 사례 중, 과도한 정보추구의 결과임이 확실시되는 30여 사례를 특색에 맞춰 구분한 것이며 각 유형특색이 두드러지는 사례를 본문에 포함시켰다.³⁾

3.2 유형과 사례

3.2.1 정보추구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1. 연예인 X파일

광고모델에 관한 자료 수집을 통해 모델로서의 가치평가와 모델 계약이후의 다양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광고주의 책임을 최소화 하려는 목적으로 기획 된 연예인 X파일은, 현재의 위치, 비전, 매력/재능, 자기관리, 소문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연예인을 평가하였다(부산일보 2005).

〈표 2〉 구분특성과 내용

구분특성	내 용
정보추구의 동기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성
정보추구의 주체	프라이버시 침해 주체(시스템 vs. 일반이용자)
정보와 정보추구의 성격	i. 경제적 이익 ii. 비경제적(이용자의 능동적 정보추구) iii. 와전된 방향의 정보추구

3) 사례 분석과 유형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은 2007년 11월과 12월에 진행되었다.

처음에 만든 의도는 비공개이었으나 이것이 인터넷상에 떠돌게 되면서 상황은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었다. 그 내용이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들이며, 연예인으로써의 자질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생활을 통한 평가가 내려져 있기에 문제가 된다. 또한 그것이 진실인지도 모를 갖가지 소문을 공식문서처럼 기재해놓음으로써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사례 2. 구글어스(Google Earth) 위성사진
 ‘구글어스’는 일반인들에게 위성사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구글어스가 공개하는 위성사진은 미국의 민간 상업위성 퀵버드로부터 받은 것으로 최고 해상도가 60cm에 이른다. 놀라운 해상도로 인한 그 유용성과 더불어 구글어스 위성사진 속에 개인의 사생활이 드러나게 되므로 문제가 되고 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 자신의 집에서 반라 상태로 일광욕을 즐기던 여성의 사진이 구글어스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세계일보 2006).

재미로 또는 남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해 구글어스 속 ‘지구촌’을 뒤지는 사람마저 생기자 사생활 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위성사진 속 인물과 장소를 실제로 알아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는 한술 더 떠 구글어스로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이현경 2005). 한국과 인도, 태국, 러시아 등은 구글어스 지도 속에 정부청사나 군사시설, 항만시설 등이 나

무 상세히 노출돼 국가안보가 우려된다며 이들 지역 사진을 저해상도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 기능은 구글 검색 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위성을 통한 이미지, 지도, 지형 및 3D 건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건물이나 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를 3D 입체로 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구글과 더블클릭이라는 거대 회사의 합병으로 생길 방대한 개인정보의 통합, 독점 가능성과 이로 인해 파생될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들 속에서 더욱 더 관심이 높아갔다(이데일리 2007).

이 이외에도 미국 대부호 자제인 패리스 힐튼의 개인 동영상 유출사건(일간스포츠 2004)⁴⁾과 국내 유명 탤런트 O양, B양 비디오 유포 사건(한국일보 2005)들과 같이 배포나 이용의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정보들이 정보추구과정에서 드러나게 되고 대중의 지대한 관심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접근, 배포, 확산되면서 한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되고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결과를 낳은 사례들로 언급될 수 있다.

3.2.2 시스템 상에서의 감시를 위해 과도한 정보추구를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프라이버시 침해(“빅브라더”라는 개념에 의한 분류)

“빅브라더”의 개념을 말하기 전에 이러한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잠시 언급할 필요

4)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패리스 힐튼이 처음 동영상을 찍은 것은 개인 소장용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처음의 의도와 달리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일지라도 동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유포되면서 패리스 힐튼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 있을 것이다. 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1984”년에서 빅브라더(Big Brother, 大兄)의 묘사를 통해 국가에 의한 개인 프라이버시의 상실시대를 그리고 있다. 정체불명의 독재자 아래 경찰들이 당원들의 사생활을 비롯한 모든 활동들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서민들을 세뇌교육하며, 진리성에 일하는 주인공은 당의 명령에 따라 뉴스 기사를 조작한다(Orwell 1983).

이러한 배경 속에 묘사되는 빅브라더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규제하며, 항상 주의 깊게 감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개념을 적용한 무수한 빅브라더와 리틀브라더가 존재한다(서계원 2005). 본 연구에서는 빅브라더와 리틀 브라더로 비유되는 시스템 즉, 정부와 기업이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직원이나, 일반인들을 감시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덧붙여 앞서 설명한 상황에서 더 나아가 정부나, 기업들이 자신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리한 정보요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요구로 인한 결과로서 침해해서는 안 될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여러 사례를 통해 지적하고자 한다.

사례 1. 회사 혹은 학교에서의 사원이나 교사들의 감시

- 택시기사 A씨는 택시 바퀴와 요금기에 달린 센서 때문에 한눈을 팔 수 없다고 한다. 이 센서는 GPS(위성항법장치)로 회사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어 회사는 택시 위치, 손님 승차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심지어 잠시 눈을 좀 부치려고 차를 세워도 체크 된다(한국일보 2007).

- B자동차 공장 근로자 C씨의 신분증에는 ‘무선전자태그(RFID)’가 달려 있다. 회사는 이를 통해 C씨의 위치를 탐지해 출퇴근 시간, 건물 내 위치, 자리아탈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며칠 전 한 동료가 점심시간 10분 전에 자리를 떴다가 인사과의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한국일보 2007).
- D고교 E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학교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교감의 꾸지람을 들었다. 학교 측이 교사들 몰래 교사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 글을 남기는지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것이다(한국일보 2007).
- 2003년 김포 T중·고교는 이사장의 지시로 컴퓨터 사용 원격감시프로그램인 ‘넷오피스쿨’을 설치해 교사들을 감시했다. 학교 측은 한 여교사가 쉬는 시간에 아버지 날 속옷 선물을 사려고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데 대해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동료교사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했다는 이유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으며 ‘넷오피스쿨’ 프로그램을 삭제한 다른 교사는 파면됐다(서울신문 2007).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학교나 기업의 욕심으로 과도하게 교사나 직원들의 정보를 요구하게 된 사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여러 시스템상의 기술을 이용한 감시로 인해 교사나 직원들은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며,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당하며 지내고 있다는 현실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사원들이나 교사들의 개인적 사정이 있었는지도 듣지 않고, 그 처한 상황도

이해하지 않은 채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는 사례이다.

사례 2. 안기부 도청 및 X파일 사건

안기부 도청 사건은 MBC의 기자가 2004년 말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뒤, 2005년 1월 재미동포에게서 관련 자료를 입수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입수한 자료는 95분 분량의 도청 테이프로,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삼성그룹의 고위 임원과 중앙일보의 사주가 만나, 특정 후보에게 대선 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원하기로 공모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리고 기자가 취재한 내용, 곧 X파일에 대해 보도하는 문제가 거론되었고, 김영삼 정부 당시 안기부의 비밀조직이 정계·재계·언론계 인사들의 대화를 불법 도청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X파일의 문제는 확대되었다(중앙일보 2005).

위의 사례는 빅브라더로 비유되는 정부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사례로, 상부의 지시로 미립 팀이 도청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해킹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추구와는 달리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일상적으로 행해진 광범위한 불법 도청문제를 포함하면서 빅브라더의 개념을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다.

이외에 기업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정보를 얻고자 CCTV라는 매체를 백화점 여자 화장실에 설치해서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던 백화점 여자화장실의 CCTV 설치 논란이나(한겨레신문 2007) 학교에서의 범죄 사건이나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

하고 사실적으로 얻고 싶다는 정보요구에 따른 정보추구행동을 CCTV라는 매체를 이용해 만족시킨 학교내부 CCTV 설치 사건등도 이 범주에 속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세계일보 2003).

3.2.3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정보추구 및 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상업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또는 개인 정보에 접근,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그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정보추구의 사례들은 이 유형에 속한다.

사례 1. 파파라치

파파라치(paparazzi, 단수는 파파라초)의 사전적 정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근접해서 특종 사진을 노리는 직업적 사진사를 일컫는다. 이 이름은 이탈리아의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가 만든 「달콤한 생활」에 등장한 신문사의 카메라맨에서 유래하는데 예능인·부호·정치인 등 유명인들의 스캔들이나 프라이버시를 드러내는 사진을 노리는 질이 나쁜 사진사를 지칭하게 되었다.

- 영국의 전 왕세자비 다이애나 스펜서의 죽음 - 1997년 8월 31일 애인과 함께 차에 탄 전 영국 왕세자비 다이애나는 오토바이로 뒤쫓아 오는 파파라치를 따돌리기 위해 고속 질주하다 자동차 충돌로 사망했다. 이 파파라치들은 5,6명이 몰려 이 밀회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죽어가는 다이애나 비를 구출할 생각은커녕 그 모습을 촬영하기에 급급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출판업자들의 돈을 벌기위한 야

욕 때문이다. 이 출판업자들은 파파라치라는 공격적인 자유 사진작가들에게 거액을 제공하고 다이애나의 모든 움직임을 몰래 촬영. 수백 종의 신문 및 잡지 표지에 그녀의 사진을 게재하곤 했다.

사례 2. 개인정보 거래/무단 도용

- D외고 1년에 재학 중인 정모(16.서울 목동)양은 지난달 말 집 주변의 J학원이 내건 '특목고 합격생 명단' 플래카드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것을 보게 됐다. J학원은 정양이 중학교 1학년 때 두 달 동안 다녔을 뿐 그 이후엔 일절 간 적이 없는 학원이다. 정양은 "J학원이 3년 전에 내가 잠깐 다녔던 사실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신기하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의 학부모인 김모(45.여)씨는 "아들이 초등학교 때 2~3개월 다닌 걸 가지고 외고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영어학원도 있더라."고 꼬집었다.
- 서울 M외고 1년 이모(16)양의 어머니 최연숙(43)씨는 얼마 전 집에 배달된 종합 입시학원 광고 전단지에서 딸의 이름을 발견했다. 최씨는 "딸이 다닌 학원도 아닌데 '외고 합격생 300명 돌파'라는 제목 아래 딸 이름과 출신 중학교가 나와 있었다."며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중앙일보 2006).

입시학원뿐 아니라 고시, 취업 준비학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벌어진다(중앙일보 2006). 특목고 입학자나 유명 대학에 입학 한 합격자들의 명단을 내걸면 학원의 수강생이 늘고 학원의 인지도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경쟁적으로 합격자 명단을 내걸고 있다. 심지어는 다니지도 않은 학생의 이름을 돈을 주고 뒷거래까지 하기도 하고 개인의 동의 없이 이름이 무단 도용되고 있다.

사례 3. 방송사의 몰래카메라 - 추적 엑스보이프렌드(한 케이블 방송사의 예능프로)의 사례를 바탕으로

<엑스보이프렌드>의 문제점은 오락을 위해 피의퇴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송사 제작진에 의해 사생활이 파헤쳐지고 미행을 당하며 자신의 모습이 몰래카메라에 담기는 동안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화면이 나가는 동안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방청객과 패널들의 이유 없는 비판까지 받아야 한다. 잃어버린 가족도, 만나고 싶었던 친구도 아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애인이 누군가를 통해 당신을 찾고 있다면? 더구나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뒤를 캐고 다니고 직장이나 집을 가리지 않고 당신의 모든 모습이 몰래카메라에 담겨진다면?(오마이뉴스 2007) 재회를 원하는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 그들의 옛 애인의 현재 상황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의퇴인의 권리는 지나치게 침해되고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을 방송을 위한 단순 오락거리로 전락시켰다.

이외에도 태어나자마자 방송국에 입양됐던 주인공의 생애 전부를 방송해 보여준다는 이야기로 인기를 끌었던 영화 <트루먼 쇼>나 실제 유괴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로 고 이형호군을 양육한 새어머니의 육성이 본인 동의 없이 사용된 영화 <그놈 목소리>등 또한 경제적 이익

을 위한 정보추구 및 획득 정보의 무차별적인 유출로 생겨난 프라이버시 침해의 사례이다.

3.2.4 이용자의 능동적 정보탐색의 결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인간에게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활 또한 알고자 하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특히나 인터넷 혹은 미디어라고 하는 개인정보 추적과 유포에 용이한 수단이 발달해 있고 이를 통해 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김형성, 김학신 2008). 익명성이라는 전제하에 일부 이용자들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보추구행위를 멈추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용자가 수동적으로 언론에 기사화된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얻고자 하는 하나의 '정보'를 찾아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특히 정보에 관한 대상이 연예인일 경우 관심도에 따라 호기심의 강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연예인은 사회적 위치로 인하여 개개인의 사생활 노출도가 자연히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무분별한 정보 탐색과 접근으로 인하여 사생활이 노출되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례 1. 해킹

- E-mail 해킹 - 회사원 김모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본인의 인터넷뱅킹 계좌를 도용하는 바람에 2000여만원을 잃어버렸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가 공인인증서를 포털사이트의 이메일에 저장 해놓은 것이 화근이었다. 범인은 김씨의 이메일을 해킹

해 공인인증서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해 게임머니(게임에서 돈처럼 쓰는 아이템)와 온라인 쇼핑몰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 2007).

- 미니홈피 해킹 - 지난해 4월 유명 아나운서 박지윤 씨는 자신의 미니홈피에서 관리하던 비공개 사진이 인터넷에 무차별 유포돼 곤욕을 치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범인이 박 아나운서와 친밀한 관계인 동료 아나운서의 이름을 빌어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는 손쉬운 수법으로 사진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경향신문 2007). 같은 해 8월 가수 보아 양의 미니 홈페이지를 해킹했다 구속된 대학생 서 모 씨도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던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일보 2007).
- 휴대전화 해킹 - 미국의 연예인인 패리스 힐튼의 휴대폰(PDA)이 해킹당해 사적인 사진, 메모 뿐 아니라 휴대폰 안에 소장되어있는 지인들의 개인정보 등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말았다(팝뉴스 연예 2005).

타인의 e-mail을 해킹하는 것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최근 들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사생활 유출 피해 뿐 아니라 해킹한 e-mail을 통해 스팸메일을 무차별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로 인하여 타인으로 하여금(메일주소의 주인에 관한) 신뢰도를 잃게 하고, 당사자에게는 정신적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다. 휴대폰 해킹문제 또한 개인의 연락처 노출의 위험과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의 유포 문제를 떠안고 있다. 휴대폰 안의 개인적인 데이터가 노출될 시, 하나의 개인정보로 다루어질 수 있

고 그것은 또 다른 양상의 사생활 침해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사례 2. 미니홈피 - 싸이월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A양은 최근 '싸이월드'라고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입하였다. 그러던 그녀에게 알고는 지내지만 그다지 친분이 없는 B군이 일촌신청을 해왔다. 거절하면 B군의 기분이 상할까봐 일촌관계를 수락했다. 사진과 그녀가 직접 쓴 일기 등의 개인적인 기록들을 그에게 보여주기 싫었지만 싸이월드 내에서의 공개수위는 당사자만이 볼 수 있는 비공개, 혹은 자신과 일촌만 볼 수 있는 일촌공개, 그리고 비회원에게도 모두 보여지는 전체공개 뿐이므로 어쩔 도리가 없었다(해럴드경제 2006).

이러한 경우에는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지만 언제든 집요한 정보추구의 결과로 자신이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그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3.2.5 정보요구방향 와전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애초에 알기 원하던 정보와는 달리 우연한 기회에 접한 정보가 더욱 주목받아 방향이 와전된 정보추구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를 정의내린 개념으로, 흔히 어떠한 계기로 인해 표면에 대두된 주제가 많이 다루어지며 유명인의 경우 이러한 정보추구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사례 1. 신정아 사건

2007년 후반기는 학력위조 사건으로 도마에

오른 신정아 사건이 연일 이슈화되었던 때이다. 초기의 관심사는 동국대 조교수로 특채 임용되고 광주비엔날레에서 공동 예술 감독으로 선임되었던 신씨의 박사학위 위조 의혹이었다. 이후 신씨의 학력위조 사실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 씨를 비호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학력위조 의혹은 권력형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그러나 신 씨의 이슈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주인공이라는 알몸 사진이 문화일보를 통해 유포되면서 몸 로비 의혹도 제기되었다(한겨레신문 2007).

초기의 정보추구방향은 그녀의 학력위조가 사실인가 아닌가에 집중되었으나, 이후 유례없는 선정적, 반인권적인 언론보도와 더불어 애초의 정보요구인 학력위조와는 거리가 먼 변실장과의 스캔들이나 누드집이라고 하는 사항들에 더욱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며 정보추구가 양산되게 되었다. 학력위조, 부정한 직위와 재산 축적등은 이에 상응한 처벌이 따라야 하나 <문화일보>의 신씨의 알몸 사진계제와 같은 일은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한, 일종의 폭력이며 이러한 정보추구행위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사례 2. 연예인 관련 사례

- 아이비 사건 - 가수 아이비가 전 남자친구 유모씨로부터 동영상 협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의 내막보다는 유모씨에 대한 사생활 정보가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확산된 사례이다(조선일보 2007).
- 옥소리 사건 - 이혼소송과 함께 '외국인과 외도' 기사가 나온 직후에는 그 호텔 층주 방장이라는 외국인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이혼 관련 기자회견에서 성악가 정모씨의 개인정보를 언급하면서 성악가 정모씨의 개인정보가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확산된 경우이다. '옥소리 내연남은 성악인 정XX'라는 제목의 동영상과 보이스 파일은 각 포털과 게시판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으며 이 성악가의 개인 홈페이지는 오후 내내 다운, 미니홈피에도 12,000여명의 네티즌이 일거에 몰려드는 등 북새통을 이루었다(동아일보 2007).

유명 여가수 아이비의 경우 남자친구의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저변에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 네티즌들은 남자친구의 존재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였다. 결국 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방송 출연사실까지 밝혀냈으며 세간에서는 그의 준수한 외모가 오히려 화젯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것은 본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추구하던 관점에서 전남자친구의 세부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보추구 양상이 변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추구방향의 와전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공개되었으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옥소리 사건의 경우, 이혼이라는 사실관계 정보이외에 내연남인 외국인 호텔 총 주방장이나 정 모씨의 직업과 개인사항 등에 더욱 관심을 둔 정보추구가 이루어지고 변화된 정보추구를 계속한 사례이다. 이는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

4. 제 언

정보추구행위의 과도성이 불러온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들을 매스미디어라는 정보원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상당한 수준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의 인격권침해에 대한 문제이며 그러하기에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로 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한 정보이용과 변화된 환경에 따른 올바른 정보추구 자세를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4.1 법적 장치의 정비

정보공유/분배에 대한 진지한 고민속에 적절한 법적 장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우영과 유일상의 2005년 연구에 따르면 초기의 무방비상태에서 현재 우리사회의 인터넷 규제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 바탕한 규준화의 성격을 띠고 지적하면서 현재 인터넷 내용규제는 규제-탈규제의 문제에서 “검열없는 규제,” “사회적 공동규제”를 목표로 각종 관련 규제 법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인터넷 내용심의기구를 민간화해야 한다는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였다(장우영, 유일상 2005). 이는 정부 규제의 강제력과 명확성을 살리되 정부 규제의 경직성이나 과다, 과소 및 이해 집단의 이해 반영을 감시, 대안을 제기하며, 기업의 자율 규제의 장점을 살리되 그 독점적 이해나 개인정보 침해의 본질적 욕구를 제어하는 제 3의

공공적 기능이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서는 적절한 규제 및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 개방과 공유, 참여라는 흐름에 맞추어 이용자의 자유로운 정보추구행위를 보장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한 존중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4.2 정보보호기술 개발과 도입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으로 가는 막바지에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기존의 유무선 네트워크, 홈네트워크, 블루투스등의 모든 분야를 통합하는 통신환경이라 일컬어진다. 이러한 개방환경은 이용자의 정보추구뿐 아니라 정보보호 또한 더욱더 어렵고 복잡한 양상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적응가능한 각종 정보보호기술의 개발과 적용, 실질적인 기술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SSL(Secure Socket Layer) 등의 암호화 기술, 프라이버시 정책 생성기등 정책협상기술, 필터링 기술, 익명성 기술 등이 개인정보보호기술로 사용되고 있다(김기수 2007).

웹이 인간처럼 스스로 지능을 갖게 된다는 시대, 웹 3.0의 시대에서 인간의 기본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바로 기술개발과 도입을 위한 노력에 있다 할 것이다.

4.3 정보요구/윤리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확산과 정보이용교육 확대

올바른 정보요구와 바람직한 정보추구행위

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바른 태도를 위한 정보요구, 정보윤리 등이 포함된 정보이용 교육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

클릭 한 번으로, 버튼 한 개로 원하는 때에 다른 사람의 정보를 마음껏 볼 수 있으나 그러한 행동이 지나치면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 하지 못한다면, 이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도덕적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심각한 문화지체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 1위, IT강국이라는 위상을 자랑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올바른 정보추구와 사생활보호에 관한 개인 의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바람직한 정보시민의 정보 추구 자세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의 핵심은 정보추구의 과도성과 그로 인해 자행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있다. 지난 5년여간 매스미디어를 정보원으로 하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의 정보추구과정에서 빚어진 과도성이 어떠한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나타났었는지를 총 30여개의 사례를 통해 보았다.

정보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할수록 발전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정보추구행태는 더욱더 정교해지고 다양해 질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 현상에 뿌리를 두고 최근 수년간 문헌 정보학내에서는 꾸준히 이용자의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용자가 정보요구 충족을 위해 어떤 미디어를 접촉하는지,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유형의 정보를 탐색하는

지에 대한 연구(정진식 2000)에서부터 특정 이용자에 초점을 둔 연구(곽병희 2004), 특정 상황, 특정 정보원에 기반한 이용자 정보요구에 관한 연구(이지연 2006)까지 그 연구영역도 확산되었다. 이용자의 정보추구연구는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앞으로의 연구는 그 결실을 바탕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다. 이와 발맞춰 더욱더 정교해지고 다양해진 이용자의 정보추구 행태가 불러올 프라이버시침해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도 함께 준비하고 적극적인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며 그것이 바로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직면한 시대적 사명감의 일부이다.

단순히 지금의 이용자는 이러한 정보추구행위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다양한 방면의 이용자 정보추구행태를 연구 분석, 발표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이해

를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변화와 정책 입안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용자의 자유로운 정보추구행위를 보장되 과도한 정보추구의 결과로서 생길 많은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이는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에게 현재 문헌정보학이 다루는 많은 주제 영역과 더불어 더욱 확장된 다른 주제 영역에 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능력까지도 가져다 주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알림>

2007년 11월과 12월 두달여간 수많은 사례를 살펴보며 유형화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논문의 기초를 다지는데 많은 도움을 준 민지현, 박진주, 박혜연, 신경희, 이연진, 최혜주 학생에게 감사드린다.

참 고 문 헌

- 『경향신문』, 2007. 박지윤 아나운서 사생활 해킹, 4월 30일.
- 『뉴스스』, 2007. 금감원 '사이버 범죄'와 전쟁선포, 4월 23일.
- 『동아일보』, 2007. '과경' 옥소리 "G씨 아닌 성악가 정씨의 외도 있었다." 10월 28일.
- 『부산일보』, 2005. 톱스타 악성 소문 무차별 확산, 1월 20일.
- 『서울신문』, 2007. 사내 '빅브러더' 위협수위, 11월 28일.
- 『세계일보』, 2003. [기고]물카와 도청의 공통점, 9월 5일.
- 『세계일보』, 2006. 지구촌 하늘은 지금 첩보 전쟁 중, 10월 24일.
- 『오마이뉴스』, 2007. 지나친 사생활 침해?. 3월 1일.
- 『이데일리』, 2007. 구글-더블클릭 이번엔 개인 정보 침해논란, 4월 21일.
- 『일간스포츠』, 2004. '섹스 비디오 과문' 재벌녀 패리스 힐튼, 3월 15일.
- 『조선일보』, 2007. 아이비 협박 유모씨, 지상파 맞선 프로그램 출연, 11월 2일.

- 『중앙일보』, 2005. 미립팁장 자술서에 드러난 도청문건 실상. 7월 26일.
- 『중앙일보』, 2006년. 학원 합격자 광고 분쟁. 7월 10일.
- 『팝뉴스 연예』, 2005. 패리스 힐튼 PDA 해킹, 스타들 개인 정보 대거 유출돼. 2월 21일.
- 『한겨레신문』, 2007. 교실 복도까지 CCTV, 학생 인권·사생활은 어디로?. 11월 8일.
- 『한겨레신문』, 2007. 우리 사회 부끄러움 다 드러낸 신정아 사건. 10월 12일.
- 『한국일보』, 2005. 인터넷 정보공유 급속 진화. 1월 21일.
- 『한국일보』, 2007. “늘 지켜보네” 숨막히는 회사 감시. 11월 27일.
- 『한국일보』, 2007. 보아, 홈페이지 해커 “용서안해.” 8월 4일.
- 『해럴드 경제』, 2006. 싸이월드 사생활 엿보기 ‘위협수위.’ 4월 5일.
- 장상현, 채백. 1999. 『대중매체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한나래.
- 곽병희. 2004.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도서관 정보학회지』, 35(1): 257-281.
- 김갑중. 2003. 『디지털시대의 정보 프라이버시』. 학영사.
- 김기수. 2007.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한국 정보과학회 2007 가을 학술 발표 논문집』, 34(2): 132-135.
- 김영재. 1992. 『정보추구의 동기가 정보원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형성, 김학신. 2008. 미국의 디지털 범죄와 사생활 보호. 『미국헌법연구』, 19(1): 212-238.
- 서계원. 2005. 『정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 - 개인 정보보호 기본법안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11(1): 200-210.
- 성선제. 2004. 정보화시대에서 프라이버시의 변화. 『공법연구』, 32(5): 317-346.
- 우지숙. 2005. 정보통제권에서 식별되지 않을 권리로: 네트워크 프라이버시의 새로운 개념화를 위한 연구. 『언론과 사회』, 13(4): 110-145.
- 이구현, 유일상. 2003-04. 『미디어와 프라이버시 연구』. 서울: 한국언론재단.
- 이지연. 2006. 『산학연 과학기술 정보자원 이용행태 및 니즈 연구』. 서울: 한국과학기술정보원.
- 이현경. 2005. 구글 어스 안보 논란의 진실: 위성 영상 무엇이 문제인가?. 『동아시아인스』, 『과학동아』, 238: 28-29.
- 장우영, 유일상. 2005. 사이버공간의 표준화와 인터넷 규제의 동학.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8(2): 107-135.
- 장호순. 2005.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생활침해. 『언론과학연구』, 5(3): 614-657.
- 정영화. 2000. 사이버스페이스와 프라이버시. 『헌법학 연구』, 6(3): 51-53.
- 정진식. 2000. 이용자의 정보추구행동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7(3): 193-212.
- Case, Donald. 2004. 『정보추구행태론』. 사공복지, 윤정옥 역.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O'Reilly, Tim. 2005. “What Is Web 2.0.” [cited 2008.2.3].
 <<http://www.oreillynet.com/pub/a/oreilly/tim/news/2005/09/30/what-is->

- web-20.html>.
- Orwell, Goerge. 1983. 『Nineteen Eighty-Four』, USA: Penguin. 재인용: 서계원, 『정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 - 개인 정보보호 기본법안을 중심으로 -』, 서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5, 200-210.
- Prosser, William. 1960. 『Privacy』, 48 California Law Review, 48(3): 383-423. 재인용: 장호순,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생활침해. 『언론과학연구』, 5(3): 622.
- Shannon, Victoria. A 'more revolutionary' Web 『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http://www.iht.com/articles/2006/05/23/business/web.php>>. [2006.5.24].
- Warren, Brandies. 『The Right to Privacy』, 4 Harvard Review, 1890, pp.193-220. 재인용: 이구현, 유일상, 2003-04, 『미디어와 프라이버시 연구』, 서울: 한국언론재단.

